

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- **대상펀드명** : 트러스톤제갈공명소득공제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
- **효력발생일** : 2015. 7. 17.
- **정정 사유** : 다른 자투자신탁 변경 사항 반영
- **정정 내용**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5. 운용전문인력 가. 책임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2015.06.30</u>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. 모자형 구조	<u>칭기스칸플러스알파[채권혼합]</u> <u>칭기스칸 퇴직연금[채권혼합]</u> <u>칭기스칸 퇴직연금[주식]</u> <u>밸류웨이 퇴직연금[채권혼합]</u> <u>아시아장기성장주연금저축[채권혼합]</u> <u>아시아장기성장주퇴직연금[채권혼합]</u> <u>장기고배당퇴직연금[채권혼합]</u>	<u>장기성장30[채권혼합]</u> <u>장기성장40퇴직연금[채권혼합]</u> <u>장기성장퇴직연금[주식]</u> <삭 제> <u>아시아장기성장주40[채권혼합]</u> <u>아시아장기성장주40퇴직연금[채권혼합]</u> <u>장기고배당40[채권혼합]</u>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. 투자제한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] 2) 동일종목투자 트러스톤증권모투자신탁 [주식] 트러스톤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(채권)	나) (2)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: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한국은행통안안정증권,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제외) -----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</u> (3)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(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)의 시가총	나) (2)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: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한국은행통안안정증권,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제외) -----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(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,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</u>) (3)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(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)의

	<p>액비중이 10%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(<u>유가증권시장, 코스닥시장</u>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,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)투자하는 경우</p>	<p>시가총액비중이 10%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(<u>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</u>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,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)투자하는 경우</p>
<p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다.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</p>	-	<p><u>다른 자투자신탁</u> <u>변경 사항 반영</u></p>